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9. 28 선고 2021가단1222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주식회사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린

담당변호사 문종수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7. 13.

판 결 선 고 2022. 9. 28.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각 일자에 체결된 각 목록 금액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7. 9. 14.부터 2020. 2. 15.까지, 군포시 E에서 'F주유소'를 운영하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 및 같은 장소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는 원고 B에게 고용되어 F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류 판매 업무, 주유소 및 세차장 매출로 발생한 현금 보관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D은 주유를 해주거나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현금을 원고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매출 입금 상황을 관리하는 단말기를 조작하여 현금 매출 발생 사실을 단말기에 입력하지 않고 이를 생활비 또는 유흥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즉, 2018. 7.경부터 2020. 2. 14.까지 주유대금으로 받은 원고 회사 소유 현금 합계 211,558,002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자기의 승용차 등에 1,476,814원 상당의 유류를 임의로 주유하여 위 금액 상당의 원고 회사 소유 유류를 횡령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세차대금으로 받은 원고 B 소유 현금 합계 221,730,95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2019. 7. 4. 원고 B에게서 168,000,000원 상당의 수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원고 B의 어머니께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부받은 뒤 그 중 1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원고들은 D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합101251)를 제기하여 2021. 5. 13. "D은 원고 회사에게 213,034,816원, 원고 B에게 231,730,9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1. 5. 28. 확정되었다.

라. D은 2018. 7. 7.부터 2020. 2. 11.까지 어머니인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12,60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증여')하였다.

마. D은 2014. 11. 18. 군포시 G아파트 H호 중 1/2 지분(이하 'G아파트 지분')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2021. 6. 11. 현재 위 지분의 감정평가액은 1억 8,2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통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들로부터 횡령한 돈 일부를 피고에게 송금(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는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D으로부터 증여받은 12,600,000원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 1)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민사소송 판결이 있는 2021. 5.경에서야 확정되었고, 각 송금 당시에는 그 송금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심화되지 않았다. D은 G아파트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2017. 9.경부터 원고들에게 고용되어 월급도 받고 있었으므로 매월 40~50만 원 정도의 송금으로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한다는 인식을 할 수는 없었다.
- 2) 피고는 D에게서 12,6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빌려준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D이 원고들의 현금 수입 또는 유류를 횡령하기 시작한 2018. 7.경부터 D에게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되었고, 2020. 2. 14.까지 횡령액 합계가 각 213,034,816원, 231,730,950원이 됨으로써 각 손해배상채권액도 그 금액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원고들과 D 사이의 민사소송 판결이 선고된 2021. 5.경에서야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D의 횡령 행위 즉시 그 횡령액 만큼의 손해배상채권은 성립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에서는 이미 성립한 손해배상채권의 내용을 판결로써 선언하고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 사해행위 여부 판단 기준 시점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D은 2018. 7. 7.부터 2020. 2. 11.까지 97회에 걸쳐 짧게는 2일, 길게는 28일의 간격을 두고 10만 원 또는 20만 원 또는 40만 원씩 어머니인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이처럼 며칠 간격으로 일정한 금액(2019. 8.경까지는 대부분 1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부터는 20만 원씩 송금했으며, 간헐적으로 40만 원을 송금)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피고 스스로도 그 금액이 전부 피고의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일련의 송금은 단일한 동기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97회의 송금행위 각각에 대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련의 송금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D의 무자력 여부, D과 피고의 사해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일련의 송금행위를 종료한 2020. 2. 11.이 된다.

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공동담보 부족 여부

2020. 2. 11. 당시 D의 적극재산으로는 G아파트 지분이 있었고, 2021. 6. 11. 기준 감정평가액이 1억 8,200만 원인 점에 비추어 2020. 2. 11.에도 비슷한 금액이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한편, 2020. 2. 11. 당시 D의 원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액은 213,034,816원,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액은 231,730,950원에 이르러 소극재산이 원고들에 대한 채무만 하여도 4억 4,400여만 원에 이르렀다(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채무 외 대부회사에 대한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채무가 책임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12,600,000원을 아무 대가 없이 피고에게 송금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D에게서 12,6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사해의사

2018. 7.경부터 2020. 2.경까지 원고들의 현금 수입 등을 4억 4,000여만 원에 이르도록 횡령하면서 피고에게 며칠 간격으로 10~40만 원씩 합계 1,260만 원을 송금해온 D로서는 어느 시점부터는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액이 누적되어 G아파트 지분 가액을 초과하게 되었다는 사실,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는 비록 한 개만 떼어놓고 보면 소액이지만 장기간 계속 반복될 경우 부족한 변제자력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이 사건 증여가 D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증거가 없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증여액 1,260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6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림

[별지]

순위	거래일자	금액	비고
1	2018.7.7.	100,000	
2	2018.7.14.	100,000	
3	2018.7.21.	100,000	
4	2018.7.28.	100,000	
5	2018.8.13.	100,000	
6	2018.8.27.	100,000	
7	2018.9.17.	100,000	
8	2018.9.24.	100,000	
9	2018.10.1.	200,000	
10	2018.10.8.	100,000	
11	2018.10.14.	100,000	
12	2018.10.23.	100,000	
13	2018.10.29.	100,000	
14	2018.11.5.	100,000	
15	2018.11.12.	100,000	
16	2018.12.10.	100,000	
17	2018.12.18.	100,000	
18	2018.12.26.	100,000	
19	2019.1.1.	100,000	
20	2019.1.9.	200,000	
21	2019.1.22.	100,000	
22	2019.1.26.	100,000	
23	2019.1.29.	100,000	
24	2019.2.2.	100,000	
25	2019.2.6.	100,000	
26	2019.2.9.	100,000	
27	2019.2.12.	100,000	
28	2019.2.16.	100,000	
29	2019.2.19.	100,000	
30	2019.2.23.	100,000	
31	2019.2.26.	100,000	
32	2019.3.3.	100,000	
33	2019.3.5.	100,000	
34	2019.3.9.	100,000	

35	2019.3.12.	100,000	
36	2019.3.19.	100,000	
37	2019.3.23.	100,000	
38	2019.3.26.	100,000	
39	2019.3.31.	100,000	
40	2019.4.2.	100,000	
41	2019.4.6.	100,000	
42	2019.4.9.	100,000	
43	2019.4.13.	100,000	
44	2019.4.16.	100,000	
45	2019.4.20.	100,000	
46	2019.4.23.	100,000	
47	2019.4.27.	100,000	
48	2019.5.1.	100,000	
49	2019.5.4.	100,000	
50	2019.5.7.	100,000	
51	2019.5.11.	100,000	
52	2019.5.15.	100,000	
53	2019.5.19.	100,000	
54	2019.5.23.	100,000	
55	2019.5.25.	100,000	
56	2019.5.30.	100,000	
57	2019.6.7.	200,000	
58	2019.6.11.	100,000	
59	2019.6.17.	100,000	
60	2019.6.19.	100,000	
61	2019.6.23.	100,000	
62	2019.6.26.	100,000	
63	2019.7.2.	200,000	
64	2019.7.7.	100,000	
65	2019.7.10.	100,000	
66	2019.7.13.	100,000	
67	2019.7.17.	100,000	
68	2019.7.21.	100,000	
69	2019.7.23.	100,000	
70	2019.7.27.	100,000	
71	2019.7.30.	100,000	
72	2019.8.4.	100,000	

73	2019.8.6.	100,000	
74	2019.8.13.	200,000	
75	2019.8.22.	200,000	
76	2019.8.31.	200,000	
77	2019.9.7.	200,000	
78	2019.9.14.	200,000	
79	2019.9.16.	100,000	
80	2019.9.22.	200,000	
81	2019.9.30.	200,000	
82	2019.10.9.	200,000	
83	2019.10.13.	200,000	
84	2019.10.19.	200,000	
85	2019.10.29.	200,000	
86	2019.11.6.	200,000	
87	2019.11.15.	200,000	
88	2019.11.25.	200,000	
89	2019.12.4.	200,000	
90	2019.12.9.	200,000	
91	2019.12.15.	200,000	
92	2019.12.23.	200,000	
93	2019.12.31.	200,000	
94	2020.1.12.	200,000	
95	2020.1.22.	400,000	
96	2020.1.27.	200,000	
97	2020.2.11.	200,000	
합계		12,600,000	

